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확산〉
■ 황정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900호)

2024. 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확산(안 제13조의3 신설)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황정아의원 등 13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9. 11.

다. 회부연월일 : 2024. 9.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5년 단위로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재취업 지원 사업 등 여성과학기술인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우수사례를 발굴·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 및 세미나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확산(안 제13조의3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관련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시키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13조의3(우수사례의 발굴·확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u>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u> <u>1.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우수사례 발굴·포상 및 홍보</u> <u>2.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우수사례 확산</u>

현행	개정안
	<u>포럼 및 세미나 개최</u> 3. 그 밖에 <u>여성과학기술인의</u> <u>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u> <u>한 사업 지원</u> ③ 국가는 우수사례 발굴에 따 라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 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나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에 대하여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 시행 근거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동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문에 따라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포상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임.

<지방자치단체 및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관련 조문 현황>

지방자치단체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 시행계획 수립(제5조) • 이공계 진학 및 진출의 촉진(제7조) • 이공계대학등의 여학생 비율의 적정 유지 등(제8조) • 이공계 여학생에 대한 지원(제9조) • 여성과학기술인 연구활동 등에 대한 지원(제10조) • 적극적 조치(제11조) • 취업·재취업 지원(제13조) • 경력단절 예방 지원(제13조의3)	• 적극적 조치(제11조) •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의 지정(제12조)

다만,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우수사례를 발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조문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이 아닌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 안 제13조의3의 취지에 맞게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 아닌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셋째, 안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 추진은 예산사업 추진 과정에서 구체화될 수 있으므로 이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227